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4
----------	-----

발의년월일: 2015년 3월 30일

발 의 자: 김현아, 이숙자, 김제리,
이정훈, 문종철, 최호정,
신건택, 우창윤, 김영한,
김생환, 김경자, 오경환,
이명희, 김동윤 의원(14명)

1. 개정이유

-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원리로 운영되는 새로운 경제영역으로서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 비율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이내로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 나. 관계부서 : 해당사항 없음.
-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u>사회적경제기업</u>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p>	<p>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u>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u>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비율을 총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로 정하는 것으로 별도 조직의 신설 또는 예산의 소요가 없음

4. 작성자

서울시의회 김현아 의원